

법률 의견서

I.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1. 피의사실의 요지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견

가. 서체도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서체파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5632 판결 등).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뿐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이번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서체 파일을 복제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서체 파일을 이용하여 서체도안이 현출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서체 파일을 복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권리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저작물작성(저작권법 제16조~22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체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용만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던 서체 중 _____을 선택하여 사용하여 이 사건 행사에 사용된 문구 2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등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고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 _____에서 “본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_____) 또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본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구매 및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거나, 무상사용요건 유무를 확인한 이후 고소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무료사용신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고소인은 피의자가 위 절차를 거친 기록이 없으므로 무단복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과거 수년간 네이버 소프트웨어 자료실을 통해 무료 폰트를 제공한 바 있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서체 파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이고 한정적인 이용의 경우 업무상으로 이용하더라도 서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복제가 없는 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교육적 및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해당 판례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인 피고 복지원의 이 사건 홍보지 제작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향상 및 영양 증진과 가정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이라는 공
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교육
프로그램 활동은 비영리적, 비상업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사건 홍보지는 피고 복지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일정, 참가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서체는 이 사건 홍보지의 제목, 위 행사의 일정, 참가대상, 참가신청 방법 부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홍보지는 1쪽 짜리 분량에 불
과하다.

이 사건 홍보지의 홍보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홍보지를 여러차
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지의 내용상 게시기간 또한 한정
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복지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홍보지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피의자의 서체 이용의 경우 위 판례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적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비영리법인인 복지관 행사 중 “ ”, “ ”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 ”이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것이며 2개의 문구라는 분량에 불과하고 이의 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위 행사 참석 대상자로 한정된다고 보이고, 1차례 띄워진 것이며 게시기간 또한 당일 행사 도중 소개 인사하는 잠시의 시간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구를 작성하고 이를 화면에 띄운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이 사건 서체 파일 사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복제 자체가 허락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용조건 위반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피의자는 고소인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한 바 없어 이는 판례상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했을 경우에도 판례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복제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서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 ”에서는 누구나 비상업적 용도로 자유

롭게 사용가능한 개인용 무료아웃라인폰트가 매월 10, 20일 업데이트 됩니다.”라고 고지하여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이 사건 서체도 2012. . . 이후부터 이러한 홍보 속에 무료로 제공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고소장 기재 사실과 달리 수년간 네이버 무료 폰트 자료실에서 고소인의 서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위 서체 프로그램을 네이버 무료 폰트 자료실 등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받았다면 이용조건을 어기고 상업적 용도로 쓴다고 할지도 저작권침해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이와 관련하여 개인 디자이너가 네이버 자료실의 무료 폰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은 고소인의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사안이 형사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고 민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고소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22. 1.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나66210 판결).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이를 다운로드받아 약관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만 판단하겠다고 명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마.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음

위 창원지원 판결의 재판부는 피고에게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허락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 자체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서체가 네이버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2. 1.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나66210 판결)

해당 판결은 앞으로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허락계약 과정에서 사용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 있는 선례에 해당합니다.

II.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한 바 없으며,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무료 서체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와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피의자의 무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